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5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121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의2"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0조의2"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머목2) 및 같은 호 서목2)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300	400	500
300	400	500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